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52
----------	-----

2012년 7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4월 16일 이상호 의원(찬성자 11명)
-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7일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 6월 2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호 의원)

가. 제안 이유

장애인정책의 기본시각은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장애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장애가 극복의 대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가 극복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장애문제는 오로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제4조 제1항 4호 나목에서는 동 조례 제2조 제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복지상’의 시상분야로 ‘장애극복자분야’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장애인정책의 기본시각에 배치될 우려가 있음.

나아가 ‘장애극복자’라는 표현은 장애를 극복의 대상 즉 ‘어려움’, ‘불편함’, 나아가 ‘비정상’으로 낙인을 찍음으로서, 장애인을 그러한 표현의 반대개념에 위치하는 이른바 일반인 또는 정상인과 구분해 버리는 위험한 개념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문명국가·도시에서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임.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분야에 대한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내포하는 ‘장애극복’을 이유로 하기보다는 장애인인권 증진과 같이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을 이유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제4조 제1항 4호 나목의 ‘장애극복자분야’를 ‘장애인인권분야’로 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장애극복자분야’를 ‘장애인인권분야’로 함(안 제4조제1항4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서울시 시민상은 봉사상을 포함하여 9개 시상종류별로 실시하고 있는 바, 그 중 서울시 복지상에 대해서는 ‘복지자원봉사·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와 ‘장애극복자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의 정부포상이 종전 ‘올해의 장애극복상’에서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변경(2009년)된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상 중 ‘장애극복자분야’를 ‘장애인인권분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 종전의 ‘올해의 장애극복상’은 1996년 9월 15일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장애인을 발굴·시상해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장애극복’이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2009년 1월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변경되었음.
-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장애인인권분야가 장애인복지 관련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수상자 선정 등 서울특별시민상(서울특별시복지상)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장애유형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411,570	212,084	45,594	42,807	42,647	2,810	22,651	3,688
(100%)	(51.5%)	(11.1%)	(10.4%)	(10.4%)	(0.7%)	(5.5%)	(0.9%)

정신장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간 질
15,181	12,910	2,133	2,526	1,840	423	2,685	1,591
(3.7%)	(3.1%)	(0.5%)	(0.6%)	(0.4%)	(0.1%)	(0.7%)	(0.4%)

※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집행부가 제출한 장애인 현황 자료를 보면, 등록 장애인수는 41만명 (서울시전체인수 1,053만명에서 3.9% 비중)이고 이중 후천적 요인(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한 장애인이 약 9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 바,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일반인에게도 공통의 현안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임.
- 장애인의 현안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과제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할 정책적 현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 취지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의원 발의)

의안 번호	752
----------	-----

발의년월일 : 2012년 4월 16일
발 의 자 : 이상호 의원(1명)
찬 성 자 : 최강선·정세환·장정숙·박양숙·
김종욱·정용림·최웅식·박래학·
김동욱·박진형·조규영 의원(11명)

1. 제안이유

장애인정책의 기본시각은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장애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장애가 극복의 대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가 극복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장애문제는 오로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제4조 제1항 4호 나목에서는 동 조례 제2조 제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복지상’의 시상분야로 ‘장애극복자분야’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장애인정책의 기본시각에 배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장애극복자’라는 표현은 장애를 극복의 대상 즉 ‘어려움’, ‘불편함’, 나아가 ‘비정상’으로 낙인을 찍음으로서, 장애인을 그러한 표현의 반대개념에 위치하는 이른바 일반인 또는 정상인과 구분해 버리는 위험한 개념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명국가·도시에서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입

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분야에 대한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내포하는 ‘장애극복’을 이유로 하기보다는 장애인인권증진과 같이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을 이유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제4조 제1항 4호 나목의 ‘장애극복자분야’를 ‘장애인인권분야’로 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장애극복자분야’를 ‘장애인인권분야’로 함.(안 제4조제1항4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4호 나목 중 ‘장애극복자 분야’를 ‘장애인인권 분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상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서울특별시복지상</p> <p> 가. 복지자원봉사·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 : 9월 7일</p> <p> 나. <u>장애극복자</u>분야 : 장애인주간 (4월 20일~4월 26일)</p>	<p>제4조 (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상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서울특별시복지상</p> <p> 가. 복지자원봉사·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 : 9월 7일</p> <p> 나. <u>장애인인권</u>분야 : 장애인주간 (4월 20일~4월 26일)</p>